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 장려를 위해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고,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읍·면·동 수당을 인상하며, 재난의 대응·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월 상한액을 확대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가축방역 등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원의 18퍼센트 이내에서 21퍼센트 이내로 확대하며, 우수 성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을 위해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하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휴직기간은”을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으로 한다.

제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 또는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
2. 별표 3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금 또는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1조의2제3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되, 둘째 이후 자녀에 대

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으로, “경우”를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로,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거나 당연히 면직되는”을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 또는 면직되거나 직권으로 면직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카목의 수당

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가족수당”을 “가족수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년 미만	30,000원
-------	---------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다목 중 “주된”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통학 및 교육지원을 주된”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2호의 지급대상란 라목 중 “검역업무와”를 “검역업무,”로, “검사업무”를 “검사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 3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350,000원 초과 월 6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70,000원”을 “8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전담 부서 근무자 중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의 제11호의 지급대상란 차목 중 “18퍼센트”를 “21퍼센트”로 하고, 같은 란 제13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1) 중 “80,000원”을 “1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6항,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부터 적용하되, 같은 조제6항제2호와 관련 연속하는 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分から 적용한다.

제5조(직권면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별표 3의2]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7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근수당) ① (생 략)	제6조(정근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②-----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	-----
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
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	-----
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	-----
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제14조제1호 · 제3호 · 제3호의2	-----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	-----
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	-----
상에 의한 <u>휴직기간</u> 은 실제 근무	----- <u>휴직기간</u> 및 「교육공
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	<u>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u>
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	<u>따라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의 사</u>
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	<u>립학교 근무기간은</u> -----
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⑥·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부정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
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조제8호나목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 또는 장기성과
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의
공무원

2. 별표 3 성과상여금의 지급등
급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
정」 별표 14 성과연봉의 지
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3년
이상 연속하여 받은 공무원

⑦ 제6항에 따른 특별성과가산
금 또는 장기성과급의 적용대상
은 별표 3의2와 같다.

⑧·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⑩ 제9항-----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급하되, 둘째 이후 자녀
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
정한 육아휴직수당을 매월 지급
한다. --- 육아휴직 -----

----- 임기제공무원 또는 별
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④ 삭 제

⑤ ~ ⑧ (생 략)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생 략)

② 삭 제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
외한다)은 같은 표에 따른 수당
상호 간에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 12. (생 략)

<신 설>

④ ~ ⑫ (생 략)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
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
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
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

직권으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 또
는 면직되거나 직권으로 면직되
는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③-----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별표 9 제1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카목의 수당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

----- 가족수

<u>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6조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제17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에 따른 연가보상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은 전일제 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u> ② 삭 제 ③ (생 략)	<u>당,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제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1호사목의 수당은 제외한다)-----</u>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3